

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

(한병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67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9.

발의자 : 한병도 · 박상혁 · 김영배
전용기 · 양부남 · 진선미
강경숙 · 신영대 · 이기현
김교홍 · 최혁진 · 윤준병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월 1회 실시하는 자체점검에서 허위 또는 부실하게 점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, 승강기 자체점검을 충실히 게 이행할 수 있도록 1인당 월간 점검대수를 제한하는 근거와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 시 자체점검자를 입회하게 하고, 입회를 거부 ·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, 행정안전부에서 유지관리 실태조사 시 자체점검 실시 상황 확인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 영상정보 등을 요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승강기 관리주체가 장기간 소재가 불명 한 이유 등으로 승강기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건물의 입주자 등이 관리주체로 임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)

제2조 등).

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7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호 라목(종전의 다목) 중 “가목 또는 나목”을 “가목부터 다목까지”로 한다.

다.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자의 부재 등으로 승강기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건물의 입주자(가구 등으로 구성된 경우 가구별 1인)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대표로서 시·도지사에 관리주체 임시 선임을 신고한 자(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자의 복귀 시 임시 선임 효력을 소멸한다)

제31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제4항”을 “제5항”으로, “자격”을 “자격, 점검반의 구성”으로 한다.

⑤ 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는 자체점검을 수행하는 소속직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를 초과하여 자체점검을 수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이 경우 관리주체는 제31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수행하는 사람을 입

회하게 하여야 한다.

제7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1항과 제2항”을 “제1항부터 제3항까지”로 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리주체 등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 영상정보와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82조제1항제5호를 제5호의3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5호의3(종전의 제5호) 중 “제31조제5항”을 “제31조제6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제31조제5항에 따른 자체점검 대수를 초과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수행하도록 한 자

5의2. 제31조제6항에 따른 점검반으로 구성하지 아니한 자

15의2. 제3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검사 입회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제7호다

목, 제2조제7호라목 및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6. (생 략)</p> <p>7. “관리주체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</p> <p>가.·나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다. <u>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 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-----.</p> <p>가.·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다.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부재 등으로 승강기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건물의 입주자 (가구 등으로 구성된 경우 가구별 1인)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대표로서 시·도지사에 관리주체 임시 선임을 신고한 자(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복귀 시 임시 선임 효력은 소멸한다)</u></p> <p>라. <u>가목부터 다목까지-----</u></p>

제31조(승강기의 자체점검) ① ~ ④ (생 략) <u><신 설></u> <u>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, 자체점검의 기준·항목 및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	제31조(승강기의 자체점검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는 자체점검을 수행하는 소속직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를 초과하여 자체점검을 수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 <u>⑥ -----제5항-----</u> ----- -----자격, 점검반의 구성----- ----- -----.
제32조(승강기의 안전검사)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(이하 “안전검사”라 한다)를 받아야 한다. <u><후단 신설></u> 1. ~ 3. (생 략) ② ~ ④ (생 략)	제32조(승강기의 안전검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제31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수행하는 사람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.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74조(실태조사) ① · ② (생	제74조(실태조사) ① · ② (현행과

략)

<신 설>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제82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4.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같음)

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리주체 등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 영상정보와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-----

-----.

제82조(과태료) ① 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제31조제5항에 따른 자체점검 대수를 초과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수행하도록 한 자

5의2. 제31조제6항에 따른 점검반으로 구성하지 아니한 자

<p>5. <u>제31조제5항</u>에 따른 자체점검을 담당할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</p> <p>6. · 7. (생략)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1. ~ 15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16. ~ 20. (생략)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	<p>5의3. <u>제31조제6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</p> <p>6. ·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1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5의2. 제32조제1항 후단에 따</u> <u>른 안전검사 입회를 거부·</u> <u>방해 또는 기피한 자</u></p> <p>16. ~ 20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--	--